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제 1/2569 호
기존 생산기지의 유지 및 확장 방안

2022 년 12 월 8 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 8/2565 호『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』에 따라, 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존의 대규모 투자자가 계속해서 태국을 생산기지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 년(1977 년) 투자촉진법 제 16 조, 제 31 조, 제 35 조 및 개정안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.

1. 모든 짱왓[1](province)은 투자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.

2. 투자 촉진 신청자는 기존에 투자청 촉진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하며, 같은 법인으로 지난 15 년간 (2026 년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라면 2011 년부터 2025 년까지, 2027 년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라면 2012 년부터 2026 년까지) 최소 3 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어야 한다. 해당 프로젝트들의 합산 투자금액은 승인 단계에서 100 억 바트(토지 비용과 운전자금을 제외) 이상이어야 한다.

3. 투자 금액이 5 억 바트(토지 비용과 운전자금 제외) 이상인 증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투자청이 규정한 특정 정책에 따라 인센티브(권리 및 혜택)를 부여하지 않는 유형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.

   3.1 A1+ 그룹의 사업의 경우, 법인세 면제 기간을 추가로 3 년 부여한다. 단,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은 13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  3.2 A1 및 A2 그룹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,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5 년 간 투자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표준 세율의 50% 만큼 감면한다.
   3.3 A3, A4 및 B 그룹에 속한 사업의 경우, 법인세 면제 기간을 추가로 3 년 부여한다. 단, 총 법인세 면제 기간은 8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4. 합산하여 8 년을 초과하는 법인세 면제 권리 및 혜택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 35 조 1 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다.

5. 이 방안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받은 프로젝트는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볼 수 없다.

6. 이 방안은 2026 년 첫 근무일부터 2027 년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투자촉진 신청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.

---

[1]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의 도(道)에 해당하는 개념이다. 태국에는 총 76 개의 짱왓이 있다.

고시일 2026년 1월 15일

Ekniti Nitithanprapas

(Mr. Ekniti Nitithanprapas)
부총리
투자위원회 의장